



[2017.8.16.] [28243 , 2017.8.16.,]

() 044 - 200 - 5821, 5820

() 044 - 200 - 5373

1 () 「 」 .

1 2() 「 」 (" ") 2 16 " 60

1. 「 」 2 2

2. 「 」 2 3

[2014.11.14.]

2 () 3 1 1 (

3 1 1 가) 46 2 · 4 , 47 , 49 가 가

50 . , 3 1 1 . < 2014.11.14.>

3 (가) 6 1 가 (" ")

. < 2013.3.23.>

1.

2.

3. ·

4. ,

5. · ·

6. ·

7.

8. ·

9.

10.

11. ·

12.

13. · ·

14.

, · · · (" · "), · · (") , 「 」 4 (" ")

. < 2013.3.23.>

. < 2013.3.23.>

4 () 7 1 (" ") , · , · ·

(" ") . < 2013.3.23.>

1 10 31

(" ") . < 2013.3.23.>

2

가

2013.3.23.>

2 3

. < 2013.3.23.>

2

. <

2013.3.23.>

5 ()

8 1

(海圖)

< 2013.3.23.>

8 5

3 1 4

「

」

. < 2014.11.14.>

6 () 10 3

1

7 () 14 2

2

7 2() 15 3

(" ")

2 2

[2014.11.14.]

8 () 15 2

18 4

. < 2013.3.23.>

8 2(가) 18 2 1 가

(" 가 ") 2 2

15 1

")

18 2 3

가

(")

1. 18 2 2

2. 18 2 2

3. 2

18 2 4

1. 18 2 3 가

2.

가

18 2 8

30

가

1 4 가 , ,

[[2014.11.14.](#)]

9 () 29 2 가 (價額)

(公賣)

가 . < [2013.3.23.](#) >

1

7 . < [2013.3.23.](#) >

1.

2.

3.

1

「 」 . < [2013.3.23.](#) >

10 () 34 3 " " " ,

< [2014.11.19., 2017.7.2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 < [2014.11.19., 2017.7.26.](#) >

11 (가) 34 3 가 가 (

) . < [2013.3.23., 2014.11.19., 2017.7.26.](#) >

1

가

가

. < [2014.11.19., 2017.7.26.](#) >

2

가

가

. <

[2013.3.23., 2014.11.19., 2017.7.26.](#) >

3 가 10 1 가 ,
가
4 가 . < 2014.11.19., 2017.7.26. >

12 <2015.12.15.>

13 (.) 40 2 . . (手旗) .
(發光) . (旗旒) .

14 <2015.12.15.>

15 () 46 2 2 " "
. < 2014.4.8., 2016.12.30. >

1. 「 」 23 100 500 .
가 ()

2. 「 」 2 1 3 가 (平水)

가. 가 2 가 100
. 가 100

2 2

100 2

100

3. 500 (浚渫船)

46 4

"

"

1 2

< 2014.4.8. >

[2014.4.8.]

16 () 46 6
. 3 .

17 () 48 (" ")
()

. < 2013.3.23. >

1. 18 1

2.

3.

4. ()

5.

1

18 1

. <

2013.3.23. >

2

. < 2013.3.23. >

1.

- 2.
- 3.
- 4.
- 5.
- 6.

48 1

.< 2013.3.23.>

- 1.
- 2.
- 3.

18 () 48 2

- 1.
- 2. 2
- 3. 11

7

7

1

4. 4

(

)

48 2

(" ")

4

19 () 55 1 " "

[2014.11.14.]

19 2() 57 1 " "

가 " 가

- 1.
- 2.

(顛覆) (曳引)

(堪航能力)

3.

(油類)

가. 「 」 2 5 : 30

14 1 1 (가): 100

[2015.12.15.]

[19 2 19 3 <2015.12.15.>]

19 3() 58 2 (" ")

4 2

1

58 2

)

1

1.

58 1

1

2. 1
58 2 , 58
2
. < 2015.3.30.>

1. 58 1 .
2. , 59
4 .<

2016.12.30.>
[2014.11.14.]
[19 2 <2015.12.15.>]

20 () 60 3
. < 2013.3.23.>
1 . (「
」 60 2) 가
가 .< 2013.3.23.>
1 .
. < 2013.3.23.>

20 2() 97 3 1 .
[2014.11.14.]
21 () 99 1 .
, 1 5 , 8 8 3 「 」 2 「
」 3 2 1 3 1 가 가
, 6 , 7 8 2 (「 」 6 1 가
) . < 2013.3.23., 2014.4.8., 2014.11.14., 2015.8.19.,

2015.12.15.>

1. 26 2 3
2. 27 1
3. 28 2 3
4. 29 1
5. 30 .
6. 58 .
7. 59
8. 101 1
- 8 2. 110 2 2 3 .
- 8 3. 110 3 8 10 .
9. <2015.12.15.>

99 1 . . . , 5
 9 , 27 28 3 「 」 2 「 」
 3 2 1 3 1 가 가
 , 24 , 25 28 (「 」 6 1 가
) .< 2012.4.10., 2013.3.23., 2014.4.8., 2014.11.14.,
 2014.11.19., 2015.3.30., 2015.8.19., 2015.12.15.>

1. 8 2 4 가
2. 9
3. 10 2
- 3 2. 13 2 가
4. 16 1 • 2 18 2 8 •
5. 26 2 3
6. 27 1
7. 28 2 3
8. 29 1
9. 30 •
10. 31 1
11. 31 2
12. 32 1 가
13. 38 ()
- 13 2. 42 •
14. 44 1 • • 3
15. 46 3
16. 47 1 1 4 • • • ()
17. 47 1 5
18. 49 1 • 2 • 5 • 6 , ()
19. 51
20. 53 1 •
21. 53 2
22. 54 1
23. 55 ,
- 23 2. 56 1 2 • 3 • •
24. 58 •
25. 59
- 25 2. 61
26. 98 4
27. 101 1
28. 110 2 2 3 •
- 28 2. 110 3 1 5 (4 5 53 1 2
), 11 , 17 19 22 24
 •

28 3. 110 3 8 10 .
29. 110 4 .

<2014.11.19.>

99 2 38
. < 2013.3.23., 2014.11.19., 2017.7.26.>

99 1 . < 2014.11.19.,

2015.12.15., 2017.7.26.>

- 1. 12 4
- 2. 13 가, 가 , 가
- 3. 44 3
- 4. 98 1
- 5. 110 3 15 , 15 2 15 3 .
99 2 3

2013.3.23., 2014.11.19.>

22 () 101 2

. <

2013.3.23.>

- 1. 가 가 가
- 2. , 가 가
- 3. 가
- 1
「 」

22 2() 2 ()

- 1. <2015.12.15.>
- 2. 16 : 2015 1 1
- 3. 23 5 : 2015 1 1
[2014.12.9.]

23 () 110 5 .

< 23373 ,2011.12.13.>

- 1 () 2011 12 16 .
- 2 () 15 1 100
200 . 가 ()
2012 7 1 「 」 8 「 」 23
15 2 가 2 3
2 3 2 2012 7 1

「 』 8 「 』 23
 3 () 14 14
 4 ()
 3
 3
 5 ()
 2 1 " " " 「 』 " , 4 가
 (4) " 「 』 " " 「 』 " , 5
 " " " 「 』 " , 6 " 「
 「 』 " " 「 』 "
 2 1 7
 7. 「 』
 7 1 1 " 「 』 57 " " 「 』 10 " , 2 " 「
 「 』 61 " " 「 』 14 " , 3 " 「 』 62 " " 「
 「 』 31 " .

< 23717 ,2012.4.10.>

1 ()
 2 () 5 2 , 2012 1 17

< 24443 ,2013.3.23.> ()

1 () . < >
 2 5
 6 () <136>
 <137>
 3 1 14 , 2 • 3 , 4 1 • 2 , 3 • , 4 • 5
 , 5 1 , 8 , 9 1 , 2 , 3 , 17 1
 , 5 , 2 , 3 , 4 ,
 3 , 20 1 3 , 21 1 , 2 ,
 3 • 4 • 6 , 22 1 , 3 3 4 3 "

" " " .
11 1 . 3 , 17 1 3 " "
" " .
<138> <146>

< 25299 ,2014.4.8.>
1 () . , 15 2014 4 8 .
2 () 110 3 8 10
가 21 1 (8 2) 21 2 (28 2) .
47 1 1 4 .
가 가 21 2 16 .
49 1 . 2 . 5 6 . .
가 , 가
가 21 2 18 .

< 25728 ,2014.11.14.>
1 () 2014 11 15 . , 5 2 1) 3)
2015 3 25 .
2 () 58 . 59
가 21 2 24 25 .

< 25751 ,2014.11.19.>()
1 () . , 5 .
2 4
5 () <389>
<390> .
10 1 , 2 , 11 1 3 , 21 4 5
" " " " " .
11 4 " " " " .
12 1 " (2 2
)" " " .

12 2 2 21 5 " " " " .
 12 4 " " " " " " .
 21 2 12 3 , 4 " 99 1 " " 99 2
 " , " " " " , 6 " 99 2 " " 99 2 3 " .
 5 2 " " " " " " .
 <391> <418>

< 25840 ,2014.12.9.> ()
 1 () 2015 1 1 .
 2 16

< 26175 ,2015.3.30.>

< 26497 ,2015.8.19.>

< 26724 ,2015.12.15.>
 1 () 2015 12 23 .
 2 () 21 2 28
 가 21 2 28 2
 3 () 5 2
 5 2 .

< 27747 ,2016.12.30.>
 1 () , 15 1 3 1
 2 () 가 46 5
 3
 , 2019 12 31 .

< 28211 ,2017.7.26.> ()

1 () . , 8

2 7

8 () <324>

<325>

10 1 , 2 , 11 1 3 21 5

" " " " .

11 4 " " " " .

21 4 " " " " " , 5

" " " " .

5 2 " " " " .

<326> <388>

< 28243 ,2017.8.16.>()

19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제6조 관련)

구분	특정해역의 범위
인천구역	<p>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위 37도18분55초, 동경 126도28분48초(남장자서) 2. 북위 37도21분38초, 동경 126도26분29초(해리도) 3. 북위 37도20분04초, 동경 126도20분01초 4. 북위 37도18분58초, 동경 126도17분59초 5. 북위 37도17분52초, 동경 126도16분03초 6. 북위 37도16분40초, 동경 126도14분14초 7. 북위 37도12분33초, 동경 126도11분41초(대금도) 8. 북위 37도11분34초, 동경 126도11분01초(진두타도) 9. 북위 37도09분44초, 동경 126도09분17초 10. 북위 37도09분03초, 동경 126도10분33초 11. 북위 37도11분50초, 동경 126도12분35초(동백도) 12. 북위 37도15분59초, 동경 126도15분17초 13. 북위 37도19분08초, 동경 126도20분34초 14. 북위 37도20분07초, 동경 126도26분47초 15. 북위 37도16분48초, 동경 126도23분59초 16. 북위 37도14분26초, 동경 126도23분59초(서어벌) 17. 북위 37도12분16초, 동경 126도23분03초(부도) 18. 북위 37도11분10초, 동경 126도22분03초(통서) 19. 북위 37도09분04초, 동경 126도19분19초(금도) 20. 북위 37도07분28초, 동경 126도18분13초 21. 북위 37도07분00초, 동경 126도19분53초 22. 북위 37도08분58초, 동경 126도20분53초(부도) 23. 북위 37도09분40초, 동경 126도22분29초(적초) 24. 북위 37도13분24초, 동경 126도25분37초 25. 북위 37도15분41초, 동경 126도25분41초 26. 북위 37도16분28초, 동경 126도25분59초 27. 북위 37도18분30초, 동경 126도27분31초 28. 북위 37도18분55초, 동경 126도28분48초(남장자서)

부산구역	오륙도와 생도를 잇는 항계선과 오륙도 등대(북위35도05분27초, 동경129도07분38초)로부터 043도선 및 생도(북위35도02분13초, 동경129도05분36초)로부터 198도선이 북위35도03분59초, 동경129도07분52초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6.0마일 원호(圓弧)와 이루는 해역
울산구역	북위 35도24분37초, 동경 129도27분52초를 중심으로 반지름 6.0마일의 원호 및 울산항 항계선이 이루는 해역
포항구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6도07분16초, 동경 129도28분24초 2. 북위 36도07분16초, 동경 129도29분45초 3. 북위 36도03분21초, 동경 129도29분45초 4. 북위 36도06분33초, 동경 129도33분32초 5. 북위 36도04분36초, 동경 129도36분05초 6. 북위 36도00분11초, 동경 129도36분47초 7. 북위 36도00분11초, 동경 129도43분52초 8. 북위 36도19분11초, 동경 129도43분52초 9. 북위 36도19분11초, 동경 129도27분04초 10. 북위 36도07분16초, 동경 129도28분24초
여수구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0분23초, 동경 127도46분52초 2. 북위 34도43분15초, 동경 127도49분13초 3. 북위 34도40분18초, 동경 127도54분40초 4. 북위 34도35분41초, 동경 127도55분22초 5. 북위 34도35분41초, 동경 127도59분52초 6. 북위 34도39분47초, 동경 127도59분40초 7. 북위 34도43분05초, 동경 127도53분22초 8. 북위 34도43분16초, 동경 127도51분34초 9. 북위 34도44분01초, 동경 127도50분34초 10. 북위 34도44분57초, 동경 127도49분58초 11. 북위 34도46분13초, 동경 127도49분55초 12. 북위 34도50분53초, 동경 127도48분22초 13. 북위 34도50분23초, 동경 127도46분52초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 (제7조 관련)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6도38분58초, 동경 126도17분53초
2. 북위 36도38분58초, 동경 126도00분23초(용도)
3. 북위 36도13분41초, 동경 125도57분23초(황도)
4. 북위 36도07분29초, 동경 125도57분59초(어청도)
5. 북위 35도39분29초, 동경 126도05분59초(상왕등도)
6. 북위 35도20분11초, 동경 125도59분05초(횡도)
7. 북위 35도12분41초, 동경 125도53분53초(소비치도)
8. 북위 34도47분11초, 동경 125도46분53초(칠발도)
9. 북위 34도37분11초, 동경 125도47분53초(우이도)
10. 북위 34도14분41초, 동경 125도53분53초(서거차도)
11. 북위 34도14분41초, 동경 125도55분41초(동거차도)
12. 북위 34도05분48초, 동경 126도36분11초(자개도)
13. 북위 34도10분12초, 동경 127도21분23초(역반도)
14. 북위 34도14분30초, 동경 127도32분04초(대두역서)
15. 북위 34도24분47초, 동경 127도54분10초(작도)
16. 북위 34도29분47초, 동경 128도04분52초(세존도)
17. 북위 34도29분47초, 동경 128도28분28초(고암)
18. 북위 34도40분11초, 동경 128도46분28초(남여도)
19. 북위 35도00분11초, 동경 129도07분52초
20. 북위 35도23분23초, 동경 129도28분32초
21. 북위 36도00분11초, 동경 129도38분52초
22. 북위 36도07분11초, 동경 129도35분52초
23. 북위 36도11분11초, 동경 129도27분52초
24. 북위 36도30분11초, 동경 129도30분52초
25. 북위 36도46분11초, 동경 129도31분52초
26. 북위 37도03분11초, 동경 129도28분52초
27. 북위 37도14분10초, 동경 129도24분52초
28. 북위 37도41분10초, 동경 129도06분52초
29. 북위 37도41분10초, 동경 129도02분52초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제7조의2 관련)

구분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p>1.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고시 또는 변경</p>	<p>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로를 지정·고시하려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로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항로 3)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항로 <p>나. 가목에 따른 항로를 다음의 범위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대선이 이용하는 항로: 항로의 길이, 중심선의 교각(交角) 또는 폭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그 밖의 항로: 항로의 길이, 중심선의 교각 또는 폭을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p>다.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박지를 지정·고시하려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 2)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정박지 <p>라. 다목에 따른 정박지(정박구역을 포함한다)를 다음의 범위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대선이 이용하는 정박지: 정박지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그 밖의 정박지: 정박지의 면적을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p>2.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p>	<p>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을 설정·지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수역의 해도에 표시된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업법」 제3조제3호의3에 따른 채굴권을 설정하여 광물을 채취하려는 경우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 또는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 <p>나.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 등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p>
<p>3.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p>	<p>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도로법」 등에 따른 교량을 건설하거나 터널(수심이 변경되거나 해상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부설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수역의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가목에 해당하는 교량(교각을 포함한다)이나 터널의 위치, 교량의 수면상 높이 또는 터널의 수면하 깊이를 변경하려는 보수</p> <p>다. 이 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항로 또는 정박지(정박구역을 포함한다)를 횡단하는 해월(海越)케이블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구역의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p> <p>라. 다목에 해당하는 해월케이블의 위치 또는 수면상 높이 또는 터널의 수면하 깊이를 변경하려는 보수</p> <p>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선박 계류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 구역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해당 구역의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p>바.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점용·사용 구역 면적 또는 매립 구역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p>
<p>4.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p>	<p>가.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 또는 연안항을 새로 지정하려는 경우</p> <p>나.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무역항의 항만구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수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을 지정하려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 2)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p>다.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이 이용하는 계류시설의 건설</p> <p>라. 다목에 해당하는 계류시설의 변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대선이 이용하는 계류시설: 해당 계류시설의 길이 또는 접안능력을 10퍼센트 이상 연장하거나 상향하려는 경우 2) 그 밖의 계류시설: 해당 계류시설의 길이 또는 접안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연장하거나 상향하려는 경우 <p>마. 이 표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항로, 정박지, 계류시설로부터 해당 항로, 정박지,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최대 선박의 길이의 3배 안의 수역에 방파제·파제(波除堤)·방조제를 건설하려는 경우. 다만, 사</p>

	업을 하려는 수역의 해도에 표시된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마목에 해당하는 방파제·파제제·방조제의 길이 또는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가. 최고 속력이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투입하여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나. 최고 속력이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투입하여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비고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이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1일 평균 4회 이상 통항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 경우 선박의 통항량이나 규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폭풍해일주의보·지진해일주의보·태풍주의보·풍랑주의보 또는 폭풍해일경보·지진해일경보·태풍경보·풍랑경보의 기상특보가 발표되지 않은 3일 이상의 기간에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위치정보를 사용한 교통조사를 실시하여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1일 평균 4회 이상 통항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으로 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교량의 건설, 위치 변경 또는 수면상 높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인지 여부는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또는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대상수역을 통항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이 위 표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으로 본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제16조 관련)

구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이하 "외항선"이라 한다)의 사업장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이하 "내항선"이라 한다)의 사업장
경 력 기 준	안전관리 책임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외항선 또 는 해당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외항선 안전관리자로 3 년 이상 근무한 경력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 지고 선박 또는 해당 사업장에 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안전관리자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외항선 또는 해당 사 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자 격 기 준	안전관리 책임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16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 1. 안전관리체제 수립·운 영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 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 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 술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 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4. 해운·선박운항의 지식 및 육해상 직원 간의 효과 적인 의사소통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14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 1. 안전관리체제 수립·운 영 관련 국내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 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 술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 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4. 해운·선박운항의 지식 및 육해상 직원 간의 효과 적인 의사소통
	안전관리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14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 1. 안전관리체제 수립·운 영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 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 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 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 1. 안전관리체제 수립·운 영 관련 국내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 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 술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인 원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1명 이상
	안전관리 자	4척 이하: 2척당 1명 이상	8척 이하: 4척당 1명 이상
			9척 이상 15척 이하: 5척당 1명 이상
		5척 이상: 3척당 1명 이상	16척 이상: 6척당 1명 이상

비고

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은 위 표에 따른 경력기준 및 교육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위 표의 근무경력에는 1년 이상의 승선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위 표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은 정부대행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4.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5. 사업장 소속 선박이 1척(내항선은 2척 이하)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 하나의 사업장에 외항선과 내항선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안전관리책임자: 외항선의 기준을 적용한다.
 - 나. 안전관리자: 내항선 및 외항선의 자격기준 및 인원을 각각 적용한다.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제18조제2항 관련)

구분	최초인증심사 또는 갱신인증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중간인증심사 또는 수시인증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심사 경력	인증심사원이 되기 전에 사업장 또는 선박에 대한 3회 이상의 최초인증심사 또는 갱신인증심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에 참여한 경력이 각각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인증심사원이 되기 전에 사업장 또는 선박에 대한 각각 1회 이상의 최초인증심사·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학력 · 유사 경력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양계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직무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 나. 해운 관련 사업장에서 선박안전관리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대학·전문대학의 공학 또는 자연과학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선박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또는 운항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양계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직무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 나. 해운 관련 사업장에서 선박안전관리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대학·전문대학의 공학 또는 자연과학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선박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또는 운항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을 합산하여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 경력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평가결과 총점의 100분의 70 이상을 취득한 사람 1. 「국제안전관리규약」 및 이 규약이 요구하는 용어의 이해: 8시간 2. 해운 관련 법령과 국제해사기구·선박안전기술공단·선급법인 및 해사단체가 발간하는 안내서 등의 이해: 8시간 3. 인증심사에 관한 계획 및 시행에 관한 교육: 8시간 4. 안전관리의 기술적·운영적 측면에 관한 교육: 16시간 5. 해운 및 선박운항의 기본지식: 40시간	

비고

1.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은 위 표에 따른 심사경력, 학력·유사경력 및 교육 경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심사 업무에 참여한 경력은 심사경력의 인증심사 참여경력으로 본다.
3. 위 표에 따른 교육과 평가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정부대행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4.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를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표의 교육경력에 따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면제하고, 제5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위 표의 교육경력에 따른 일부 교육을 면제한다.
 - 가. 「국제안전관리규약」에 따른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심사에 48시간 이상 참여한 사람: 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교육
 - 나. 선박검사에 관한 지침 작성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호에 관한 교육
 - 다. 2년 이상의 선박승무경력 또는 선박운항경력이 있는 사람: 제5호에 관한 교육
6. 인증심사원은 최초인증심사·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3년 단위로 2회 이상의 심사경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심사경력을 유지하지 못한 인증심사원은 교육경력의 제1호 및 제3호를 내용으로 하는 8

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 이내에 최초인증심사·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 중 어느 하나에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7.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로서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법인·기관·단체가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협정이 체결될 당시 해당 법인·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국제안전관리규약」에 따른 심사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은 위 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제19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자격기준
<p>1. 책임급 해사 안전감독관</p>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p> <p>가.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여객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3천톤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p> <p>나.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선단(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7척 이상으로 이루어진 선단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7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p> <p>다.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이하 이 표에서 "선박검사원"이라 한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p> <p>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선박검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p> <p>마.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p> <p>바.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p>
<p>2. 선임급 해사 안전감독관</p>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p> <p>가.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p> <p>나.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선단의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p> <p>다.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선</p>

	<p>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p> <p>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에서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p> <p>마.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후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p>
--	---

비고

1. "해사안전 관련 분야"란 선박의 운항(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선박에 승무한 경우를 말한다), 조선, 선박안전관리, 선박검사 및 해양수산행정 등에 관한 업무 분야를 말한다.
2. 유급휴가기간은 경력기간의 산정에 포함한다.
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하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대해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책임급 해사안전감독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 1) 위 표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2) 원양어선에 대해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3) 원양어선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
 - 나.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 1) 위 표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2) 원양어선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정 제도를 위반한 경우 1) 통항로 진행방향 위반 2) 그 밖의 사항 위반	법 제110조제3항 제1호	25 15	50 30	100 50
나.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호	15	30	50
다. 법 제14조제3항제4호 후단에 따른 유조선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3호	15	30	50
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2항 제1호	250	500	1,000
마. 법 제21조제2항(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합병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4호	25	50	100

바. 법 제22조(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제5호	25	50	100
사.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제6호	80	160	300
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제7호	80	160	300
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제8호	50	100	200
차.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표시나 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제9호	50	100	200
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제10호	80	160	300
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제11호	15	30	50
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제12호	50	100	200
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불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제13호	25	50	100
거.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제14호	25	50	100
너.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제15호	25	50	100
더. 법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않은 경우 1)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2)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제15호의2		120 50	
러. 법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제15호의3	100	200	300
머.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변조·훼손한 경우	법 제110조제1항	500	1,000	2,000
버.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법 제110조제3항제15호의4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1)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50		
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사람이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5호의5	200		
어.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5호의6	50		
저. 법 제106조제17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게을리했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게을리한 경우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5호	15	30	50
		100	100	100
처.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경우	법 제110조제4항	50	100	200
커. 법 제4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7호		10	
터.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8호		100	
퍼.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증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9호		10	
허.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확인·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0조제2항 제2호	250	500	1,000
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법 제110조제2항 제3호	250	500	1,000

보고 또는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노. 법 제63조를 위반하여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0	20	30
도.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0	20	30
로. 법 제65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5	30	50
모.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5	30	50
보. 법 제67조에 따른 좁은 수로 또는 항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25	50	100
소. 법 제68조에 따른 통항분리수역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1) 통항로 진행방향 위반 2) 그 밖의 항법 위반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25 15	50 30	100 50
오. 법 제70조에 따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선이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5	30	50
조. 법 제71조에 따른 다른 선박을 추월할 때 추월선이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5	30	50
초. 법 제72조에 따른 선박이 서로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5	30	50
코. 법 제73조에 따른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5	30	50
토. 법 제74조에 따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선박이 피항선의 동작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5	30	50
포. 법 제75조에 따른 침로 및 속력을	법 제110조제3항	10	20	30

유지하여야 할 선박이 유지선의 동작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2호			
호. 법 제76조를 위반하여 항행 중인 선박이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상항공기 또는 수면비행선박(법 제7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수면에서 항행하는 때는 제외한다)이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0	20	30
구. 법 제77조에 따른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이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5	30	50
누. 법 제78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3호	15	30	50
두. 항행 중인 선박이나 어선·조종불능선 또는 조종제한선 등이 법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3호			
1) 등화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5	30	50
2)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루. 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정박선, 얹혀 있는 선박, 수상항공기 또는 수면비행선박이 법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3호			
1) 등화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2)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무. 법 제91조에 따른 음향신호설비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4호	15	30	50
부. 법 제92조에 따른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4호	10	20	30
수. 법 제93조에 따른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4호	15	30	50
우. 법 제94조에 따른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4호	10	20	30
주. 법 제95조에 따른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4호	10	20	30
추. 법 제96조에 따른 합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0	20	30